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9일 16시 00분



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사용자의 자격	3

사용자의 자격

2014.04.17 조회수 696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11-0010
담당부서	노인장애인과
상위법령	장사 등에 관한 법률
조례	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
유형	3호 -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
등록사유	보건위생
법령공표일	신설규제
존속기한	2011-01-10
규제시행/폐지일	2011-01-10
규제내용	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. 일반 시민(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) 2. 여수시 지역에 소재한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을 공설장사시설에 매장·화장 또는 봉안하고자 하는 자 3. 여수시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변사자 4. 특례자

목록

이전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1-0009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1-0011

Yeosu Web Contents

